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가단52316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변론 종결 2024. 4. 24.

판결 선고 2024. 5. 2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2. 8.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495,9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95,9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자 2022차전253633 지급명령에 기한 87,457,687원 및 그중 23,991,373원에 대한 201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모친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2. 8. 29.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자녀 피고, E, C 및 대습상속인인 손자녀 F, G는 2022. 9.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3. 4.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C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및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그 가족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목적물 가액 한도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고가 망인의 부채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 시가와 망인의 채무액을 감안하면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C의 채무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다룬다.

3.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망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2022. 8.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490,510,800원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세도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는 공시지가에 1.5를 곱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피고는 상속개시 후 망인의 근저당권부 채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인수하거나

변제하였는데, 그 금액은 합계 402,200,953원이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인 2022. 7.

19.부터 2022. 8. 29.까지 망인의 병원비 합계 11,097,166원을 부담하였고, 이후 장례비와 상속 관련 비용으로 27,164,620원을 부담하였다.

3) 피고가 망인의 생전 망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 망인은 생전에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다수의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2023. 6. 21. C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39,329,9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상속채무와 병원비, 장례비 등을 공제하면 C의 상속지분은 12,512,015원[= (490,510,800원 - 402,200,953원 - 11,097,166원 - 27,164,620원) × 1/4]인 반면, 피고가 대위변제한 C의 채무는 39,329,932원인 점, 피고가 장남으로서 망인의 생전에도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고, 실제로 현재까지 밝혀진 망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인수하였으며, 이후에 밝혀질 채무도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인 E, F, G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되 망인의 금융기관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① 상속재산은 특정 상속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실제로 특정 상속인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은 그 상속인 자신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두고 거래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의 재산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분할하는 사례는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이는 친족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 감정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로서 합리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양보한 상속인의 결단을 모두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채권자 보호의 과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상속인의 의사표시는 실질에 있어서 상속포기 또는 일부 포기의 의사표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판례(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를 감안하면, 우연히 분할협의를 형식으로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법감정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④ C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C의 상속지분 포기가 특별히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한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오히려 일반채권자를 의식하였다면 상속포기의 안전한 방식을 취하였을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C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금융기관 기타 채무 등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피고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그 재산분할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나라

별지